

에너지부문 규제완화에 관한

日本經團連의 건의서

최근 日本 경제단체연합회는 임시행정 개혁 추진 심의회 공적규제의 실태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에너지 부문 등 11개 부문에 걸친 규제완화에 관한 요망(중간보고)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이 중간보고서 중 에너지 부문에 관한 사항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註>

한 국제화에의 노력이 円高차익의 소비자로의 환원과 내외가격차의 축소에 연결되어 행정개혁 본래의 목표인 국민부담의 경감에 기여할 것이다.

(2) 민간활력의 발휘와 내수확대

다음으로 내수의 지속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민간활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 분야의 자유화에 따라 신규참여의 실현, 通信서비스의 향상, 요금의 인하등이 이루어져, 경제 사회의 네트워크화가 촉진되었으며, 관련 설비투자 및 고용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

(3) 경제구조 조정

또한 경제의 구조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참여규제, 종적관계의 규제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명치 이후의 규제색채가 강한 행정자체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에 틀림없다.

日本 산업은 현재 円高, 기술혁신, 정보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내수의 개발, 신분야의 개척, 해외와의 수평분업 추진 등 종전의 업종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의 재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 때 종적관계의 규제가 기업의 유연한 대응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활동의 세부까지 간섭하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부단한 개정이 필요하다.

I. 기본방향(각 부문 공통사항)

1. 규제완화의 중요성

대외 경제마찰의 해소, 지속적인 내수의 확대, 내외의 균형있는 경제구조로의 개혁은 日本人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정책과제이다.

(1) 대외 경제마찰의 해소

대외 경제마찰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개방의 철저, 기준의 국제화,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불가피하다. 85년 7월에 발표된 시장접근(Access) 개선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Action program)에 있어서도 현재 내외의 기여에 충분히 부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처음에 규제가 있었다.」라는 사고를 불식하고, 「원칙적으로 자유, 예외적으로 규제」라는 원칙을 대외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실현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수입관련 제규제를 국력에 상응하는,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타국에 앞서 시장개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

6

규제완화야말로 행정개혁의 큰 핵심이며 작은 정부, 종적행정의 배제, 국제적조화, 자기책임의 확립이라는 행정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완화가 다른 면에서의 규제강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2. 규제완화의 추진방향

(1) 행정의존 체질의 시정

지금까지 행정개혁 가운데 규제완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규제나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관계부처의 저항이나 종적관계 행정의 폐해, 규제의 기득권이나 규제의 존폐에 이해를 갖고 있는 그룹의 반대, 기업·소비자의 행정 의존체질의 뿌리깊음 등의 이유에 의한 것이다.

종전 어떤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에서 행정의 책임소재가 추궁되고, 기업에 대한 감독 불충분을 이유로 규제 또는 행정지도가 경우가 눈에 띈다.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규제완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사업활동의 전제인 자기책임 원칙의 확립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도 문제의 해결을 우선 행정에 요청한다는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2) 규제의 근본적인 수정

정부규제를 투명도가 높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사무의 간소화로는 불충분하며, 규제 그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견지에서 근거법규 그 자체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규제완화가 행정조직의 간소화, 인원의 합리화, 예산의 삭감에 연결되고, 국민이 기대하는 본래의 행정개혁이 이루어 지며, 작은 정부가 실현된다. 현재 세입구조의 개혁, 즉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국민적과제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세출구조의 개혁, 즉 행정개혁이 전제가 된다.

(3) 액션 프로그램의 책정

日本의 경우 행정체질로서 해외로부터 재삼 개선요망이 반복되고 있어 점차 규제의 개선에 노력한다고 하는 기다림의 자세가 강하여, 대응의 지연자체가 대일비판을 야기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또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처가 규제완화를 요망하는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일부에서 눈에 띄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질을 개정하는 것이 현재 가장 요망되고 있으며, 각 부처가 자주적으로 규제를 개정하는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규제완화에 관한 기간을 설정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즉 규제완화의 포괄적인 액션 프로그램(Action Program)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II. 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요망사항

1. 기본방향

日本の 에너지 政策은 국내탄의 보호, 원자력의 도입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石油와 가스의 안정공급 확보라는 관점에서, 나이가서는 1,2차 석유위기의 체험을 반영하여,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의 완화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日本의 에너지 공급기반의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불안정한 중동정세 때문에 다시 石油수급 팽박화가 예상되는 등 장래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日本의 에너지 수급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로 円高에 의한 수입에너지 코스트가 하락하고 있다.

둘째로 경제의 국제화라는 조류속에서 에너지, 농업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국제거래 자유화의 요청이 높아

지고 있다.

셋째로는 각종에너지간의 선택과 경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네째로는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에너지공급의 중점이 양에서 질로 변하고 있다.

다섯째는 石油비축을 중심으로 한 긴급시 대응체제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에너지 정책은, 안정성(Security)과 코스트의 균형에 유의하면서, 한편으로 긴급시 대응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평상시에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에너지의 공급은 민간의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에 관한 규제로부터 단순한 사무절차에 이르는 각종규제를 계획적으로 시기를 명시하여 완화 내지 철폐하여야 한다.

규제완화야말로 행정개혁의 큰 핵심이며, 작은 정부, 종적행정의 배제, 국제적 조화, 자기책임의 확립이라는 행정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완화가 다른 면에서의 규제강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 밖에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관공서측의 기구 간소화와 인원감축도 잊어서는 안된다.

2. 규제완화의 진척상황과 당면 과제

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85년 6월에 當會가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石油의 정제, 판매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도입 추진등을 제언하였으며, 또한 86년 7월의 당회 의견기운데 해외탄 수입과 연계한 국내탄 인수의무의 철폐를 제언하였다.

그후 점차로 규제 완화의 방향이 설정되고, 구체적인 시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우선 첫째로 86년 11월의 석탄광업심의회 제8차 담신에 따라 국내탄 공급규모를 91년까지 대체로 1,000만톤 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일반소비자의 국내탄 인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게 되었다.

둘째로 87년 6월의 石油產業 기본문제 검토위원회 보고에 따라 대략 5년간에 각종 규제에 대한 단계적 완화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비허가의 탄력화(이미 실행됨)

② 개별유종(휘발유 등)에 대한 생산지도의 철폐(늦어도 88년도 말까지)

③ 주유소에 관한 이적률 및 건설지도의 순차적 철폐(늦어도 89년도 말까지)

④ 原油처리지도의 철폐(대체로 5년 이내에)

셋째로,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86년 6월, 87년 1월의 두차례에 걸친 잠정 인하에 이어, 88년 1월부터 본격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일환으로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도의 도입 등 요금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넷째로 열병합 발전 분야에서는 86년 5월, 기술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 일반전력 계통으로의 조건이 정비되었고, 더우기 87년 8월 열병합발전의 도입규모 전망과 국민경제상의 위치설정이 분명해져, 특정 공급범위가 명확화 되었다.

이와 같은 현황으로서는 규제완화가 이미 시작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든지, 스케줄이 명확하게 된 것이 많다는 점에서, 현재는 이들 시책을 규정방침대로 차질하게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이들 시책을 실행함으로써 규제완화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이들 제조치의 진척상황에 따라 그 실효성을 음미하고, 앞에서 말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더욱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합리화

상기 규제완화 이외에 기술진보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완화해야 할 것으로서 인허가, 신고 사무절차, 제검사, 자격제도, 에너지통계의 간소화, 합리화가 있다.

인허가, 신고사무절차에 대해서는 창구의 일원화나 규모에 따른 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하며, 제검사에 대해서는 기술진보나 경제규모의 확대를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다.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는 자격취득 요건이나 겸무규제를 개정하여야 하며, 통계록에 대해서는 중복보고를 폐지하여야 한다. □ <순간석유정책>